2027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

1 사업개요

▢ **지원대상** 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**농업경영체**(농업인 및 농업법인)

※ 다만, 2026년 이후 3년 이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농가는 친환경농업의무교육 이수증과 인증전환계획서를 제출한 녹아여야 함

▢ **지원내용** :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, 녹비작물 종자,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

▢ **지원자격 및 한도**

○ **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**

- (유기농업자재)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**공시 자재**(상토 제외)
  *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https://www.naqs.go.kr) 업무소개>농자재 관리>유기농업자재 공시조회
- (자재원료)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**허용 물질**
- **2025~2026년도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원**
- 유기농업자재 신청할 경우,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관행농가는 '27년 6월까지 사후제출 가능
- **친환경인증 농지는 2026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한해 지원**
- **'유기질비료 지원사업' 신청농지는 '토양개량 및 작물생육'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·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**
- 한도(ha당) : 유기 200만원, 무농약 150만원, 관행농업 100만원

○ **녹비작물 종자**

- 8종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, 연맥, 트리티케일, 네마장황
- **2025~2026년도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원**
-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관행농가는 '27년 6월까지 사후제출 가능
-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,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, ③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"유기질비료"를 50% 이내로 지원
- **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 제외**

- 한도(ha당) : 헤어리베치 60kg, 녹비(청)보리 140kg, 호밀 160kg, 자운영 50kg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 50kg, 연맥(조생종, 중만생종) 160kg, 트리티케일 160kg, 네마장황 60kg

○ **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**

- (토양검정) 시 농업기술센터(우선 활용)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**토양검정 비용 지원**(「친환경농어업법」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 제외)
- (시비처방 등 컨설팅)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, 유기농업자재 사용,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**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**
- 신청 수요, 토양검정기관 유형(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등),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·한도 매년 산정

▢ **지원조건**

○ (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, 녹비작물) **보조 50%(국비20 지방비30)**, 자부담 50%

○ (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) **보조 50%(국비50),** 자부담 50%

▢ **선정기준**

○ 우선순위 : 유기인증 농지(청년농) 〉 유기인증 농지(청년농 외) 〉 무농약인증 농지(청년농) 〉 무농약인증 농지(청년농 외) 〉 일반 농지

○ 친환경·GAP 인증 농가, 수출 농가, 농작물재해보험가입, 시 직영 로컬 출하농가, 영농규모 등

2 추진일정

▢ **사업신청** **: 2026. 11. 3. ~ 12. 31.**

○ 신청장소 :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지역농산물유통팀

○ 신청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서약서, 토양검정결과서(해당 농업인),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(해당 농업인)

▢ **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** **: 2027. 1. ~ 11.**

▢ **사업추진 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집행·정산** **: ~ 2027. 12.**

*** 현재 국비 예산은 정해지지 않았으며,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 진행 변경될 수 있음**

문의 • 농업정책과 지역농산물유통팀 (☏ 031-481-3392)

[서식 1-1]

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
<유기농업자재, 자재원료용>

신청자	생산자단체 등의 명칭		법인등록번호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
	성 명 (대표자명)			생년월일		
				성 별	*남, 여*	
	주 소			전화번호	(자택)	
					(휴대폰)	
				이메일		
	농업법인 형태	*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*		자조금 납부여부	*납부영수증 첨부*	
	본인명의 환급계좌	(은행명)		(계좌번호)		

신청농지(필지)								세부 신청품목						
읍·면·동	리·통	지번	지목	지적(㎡)	시설 여부	인증 구분	친환경농업 지구·단지내 농지여부	신청 품목	제조 업체명	신청면적(㎡)	포장 단위	신청 물량	신청품목 단가(원)	품목 소계
			1. 논 2. 밭			1. 유기인증 2. 무농약인증 3. 관행농업							*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	* 신청물량 × 공급단가

신청 소계	총 신청면적(㎡)	
	총 사업량(원)	*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(유기 200만원/ha, 무농약 150만원/ha) -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
첨부서류	1.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.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3.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	
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안산시장 귀하

붙임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※ 작성 요령
-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: 단체는 '단체명', 개인은 '개인'으로 기재
- 법인등록번호, 농업법인의 형태,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
- 신청품목 : 천적은 천적종류,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,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
- 포장단위 : 신청품목별 포장단위(예시: 500㎖, 5ℓ, 20kg 등)를 기재
- 신청품목 단가 :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'낮은 가격'을 기재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

[서식 1-2]

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

〈녹비작물 종자용〉

신청자	생산자단체 등의 명칭		법인등록번호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
	성 명 (대표자명)			생년월일		
				성 별	남, 여	
	주 소			전화번호	(자택)	
					(휴대폰)	
				이메일		
	농업법인 형태	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		참여농가수		호
	본인명의 환급계좌	(은행명)		(계좌번호)		

신청농지(필지)							신청 내용						
읍면동	라통	지번	지목	지적(㎡)	인증 구분	친환경농업 지구·단지내 농지여부	신청 품목	포장 단위	예정가격 (원/kg)	신청면적 (㎡)	신청물량 (포)	신청금액 (원)	파종시기 (월)
			1. 논 2. 밭		1. 유기인증 2. 무농약인증 3. 관행농업						* {(신청면적× 품목별 ha당 지원도)/10,000㎡}/ 포장단위	* 포장단위 × 예정가격(원/kg) × 신청물량(포)	

공급희망조합	조합명 : 농업협동조합 지점(연락처 :) *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지원 희망시 인삼재배농가는 '인삼농협'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하고 그 외 농가의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
첨부서류	1.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.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-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(경작지로 이용)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.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
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안산시장 귀하

붙임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※ 작성 요령

-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: 단체는 '단체명', 개인은 '개인'으로 기재
- 법인등록번호, 생산자단체등의 형태, 참여농가수 : 단체만 기재
- 신청품목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), 수단그라스(만생종), 연맥(조생종), 연맥, 트리티케일, 네마장황으로 구분 기재
- 포장단위 : 최소 포장단위 기재(녹비(청)보리·호밀·자운영·수단그라스·연맥 20kg, 헤어리베치 5kg)
- 예정가격 : 품목별 포장단위별 예정가격(원)을 기재
  * '27년 공급예정 가격(원/kg) : 헤어리베치(6,827), 녹비(청)보리(2,005), 호밀(3,096), 자운영(10,447), 수단그라스 조·중생종(8,570), 수단그라스 만생종(8,772), 연맥(2,717), 트리티케일(2,717), 네마장황(27,907)
- 지원 한도(ha당) : 헤어리베치 60kg, 녹비(청)보리 140kg, 호밀 160kg, 자운영 50kg, 수단그라스 50kg, 연맥 160kg, 트리티케일 160kg, 네마장황 60kg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

[서식 1-3]

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

<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>

신청자	생산자단체 등의 명칭		법인등록 번호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
	성 명 (대표자명)			생년월일		
				성 별	*남, 여*	
	주 소			전화번호	(자택)	
					(휴대폰)	
				이메일		
	농업법인 형태	*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*				
	본인명의 환급계좌	(은행명) (계좌번호)				

신청농지(필지)									신청 항목	
읍·면·동	리·통	지번	지목	지적 (㎡)	시설 여부	인증 구분	작물	친환경농업 지구·단지내 농지여부	토양검정	시비처방 등 컨설팅
			1. 논 2. 밭			1. 유기인증 2. 무농약인증 2. 관행농업			□	□
									□	□
									□	□
									□	□

구분	토양검정 신청 필지수(개) /총면적(㎡)	
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안산시장 귀하

붙임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※ 작성 요령

-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: 단체는 '단체명', 개인은 '개인'으로 기재
- 신청 항목 : 토양검정이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체크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

[서식 2]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,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.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의 사업 추진 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전화번호(자택, 휴대폰), 이메일, 은행명, 계좌번호
3. (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) 준영구(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)
4.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 □ 미동의

※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

1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)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(농협중앙회)
2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)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
3. (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전화번호(자택, 휴대폰), 이메일, 은행명, 계좌번호
4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)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(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,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파기)
5.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 □ 미동의

년 월 일

본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안산시장 귀하

[서식 3]

서 약 서

○ 성 명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상기 본인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, 녹비작물 종자, 천적을 구입·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」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, 제재부과금 부과,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사업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안산시장 귀하

참고 1 **허용물질**(「친환경농어업법」 시행규칙 [별표 1])

허용물질(제3조제1항 관련)

1.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

가.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

1)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

번호	사용 가능 물질	사용 가능 조건
1	가)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[堆廐肥: 볏짚,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(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] 나)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다)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류의 퇴구비 라)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	(1)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·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(2) 사용 가능 물질 중 라)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, 경축순환농법(耕畜循環農法: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,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) 등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「동물보호법」 제59조[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「동물보호법」(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29조를 말한다]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하고, 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

		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
2	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	충분히 부숙된 것일 것
3	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	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
4	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	부식토의 생성에 사용되는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
5	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	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
6	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	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7	혈분 · 육분 · 골분 · 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	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, 항생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
8	대두박(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, 쌀겨 유박(油粕: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,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	(1)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(2)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(3)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(Ricin)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
9	제당산업의 부산물[당밀, 비나스(Vinasse: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알코올을 생산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), 식품등급의 설탕, 포도당을 포함한다]	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
10	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	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
11	오줌	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
12	사람의 배설물(오줌만인 경우는 제외한다)	(1)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(2) 고온발효: 50℃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

		(3) 저온발효: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(4) 엽채류 등 농산물 · 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
13	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	
14	구아노(Guano: 바닷새, 박쥐 등의 배설물)	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15	짚, 왕겨, 쌀겨 및 산야초	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16	가) 톱밥,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나) 나무 숯 및 나뭇재	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 · 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 · 처리과정에서 페인트 · 기름 · 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
17	가) 황산칼륨, 랑베나이트(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) 또는 광물염 나) 석회소다 염화물 다)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라) 마그네슘 암석 마) 사리염(황산마그네슘) 및 천연석고(황산칼슘) 바)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사) 점토광물(벤토나이트·펄라이트·제올라이트 · 일라이트 등) 아) 질석(Vermiculite: 풍화한 흑운모) 자) 붕소 · 철 · 망간 · 구리 · 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	(1) 천연에서 유래하고,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(2)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(危害)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(예: 석면광, 수은광 등)은 사용하지 않을 것
18	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	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

19	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	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, 인을 오산화인(P_2O_5)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/kg 이하일 것
20	자연암석분말 · 분쇄석 또는 그 용액	(1)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(2)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하지 않을 것
21	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[광재(鑛滓): 베이직 슬래그]	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(예: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)
22	염화나트륨(소금) 및 해수	(1) 염화나트륨(소금)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(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)일 것 (2)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(가) 천연에서 유래할 것 (나) 엽면시비용(葉面施肥用)으로 사용할 것 (다)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
23	목초액	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(KSM3939) 기준에 적합할 것
24	키토산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
25	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	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26	이탄(泥炭, Peat), 토탄(土炭, Peat moss), 토탄 추출물	

27	해조류, 해조류 추출물, 해조류 퇴적물	
28	황	
29	주정 찌꺼기(Stillage) 및 그 추출물 (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)	
30	클로렐라(담수녹조) 및 그 추출물	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
2)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

번호	사용 가능 물질	사용 가능 조건
1	제충국 추출물	제충국(*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*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2	데리스(Derris) 추출물	데리스(*Derris spp., Lonchocarpus spp.* 및 *Tephrosia spp.*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3	쿠아시아(Quassia) 추출물	쿠아시아(*Quassia amara*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4	라이아니아(Ryania) 추출물	라이아니아(*Ryania speciosa*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5	님(Neem) 추출물	님(*Azadirachta indica*)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
6	해수 및 천일염	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
7	젤라틴(Gelatine)	크롬(Cr)처리 등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8	난황(卵黃, 계란노른자 포함)	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9	식초 등 천연산	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
10	누룩곰팡이속(*Aspergillus spp.*)의 발효생산물	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11	목초액	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(KSM3939) 기준에 적합할 것
12	담배잎차(순수 니코틴은 제외한다)	물로 추출한 것일 것
13	키토산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
14	밀랍(Beeswax) 및 프로폴리스(Propolis)	
15	동·식물성 오일	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만 수산화칼륨을 동물성·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.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·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.
16	해조류·해조류가루·해조류추출액	
17	인지질(Lecithin)	
18	카제인(유단백질)	
19	버섯 추출액	
20	클로렐라(담수녹조) 및 그 추출물	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21	천연식물(약초 등)에서 추출한 제재(담배는 제외)	
22	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	(1) 제1호가목1)에서 정한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(2) 물로만 추출할 것
23	가) 구리염 나) 보르도액	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

	다) 수산화동 라) 산염화동 마) 부르고뉴액	
24	생석회(산화칼슘) 및 소석회(수산화칼슘)	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
25	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	
26	에틸렌	키위,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것
27	규산염 및 벤토나이트	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
28	규산나트륨	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
29	규조토	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
30	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	(1)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(2)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(예: 석면광 및 수은광 등)은 사용하지 않을 것
31	인산철	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
32	파라핀 오일	
33	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	
34	과망간산칼륨	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
35	황	액상화할 경우에만 수산화나트륨을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.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·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.
36	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	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

37	천적	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
38	성 유인물질(페로몬)	(1)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(2) 덫에만 사용할 것
39	메타알데하이드	(1)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것 (2)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(3) 덫에만 사용할 것
40	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	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
41	비누(Potassium Soaps)	
42	에틸알콜	발효주정일 것
43	허브식물 및 기피식물	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
44	기계유	(1)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(2)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
45	웅성불임곤충	

참고 2 **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(예시)**

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

납부 대상자	농가(법인)명		대표자	
	인증번호		인증서 발급일	
	소 재 지			

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내역

대상년도	인증면적(㎡)				고지금액	납부액
	유기		무농약			
	논	밭	논	밭		
년					원	원

상기인은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함.

2018년 월 일

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인

※ 문 의 처 :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무국 ☎ 044-863-6202